

해링턴 플레이스 휴리움

| 일반공급 서류제출 안내 |

※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.

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2조(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)에 의거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전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 지참 및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청약내용과 대조·검증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, 자격 확인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※ '코로나19 바이러스'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예약제로 운영되며, 당첨자 본인 외 1인 동반입장 가능합니다.
- ※ 정당한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만 정당계약 체결[2022.03.16.(수) ~ 2022.03.20.(일) 5일간]이 가능합니다.
- ※ 원활한 서류 접수를 위해 사전 방문 예약제로 운영되오니, 이점 양지하시어 홈페이지(<http://harrington-huerium.com>)로 예약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**서류제출 기간** : 2022.03.05.(토) ~ 2022.03.13.(일) 10:00 ~ 17:00 / 총 9일간
- **서류제출 장소** : 해링턴 플레이스 휴리움 견본주택(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1017-5번지) ※ 서류 미비자, 추가 서류 제출 및 기간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.

■ 일반공급 자격 확인 서류

| 구분 | 필요서류 | 대상자 | 확인사항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|
| 필수 서류 | 신분증 | 본인 | 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※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(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),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(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) |
| | 주민등록표등본(전체) | | · 성명·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 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든 정보를 표시하여 발급 |
| | 주민등록표초본(전체) | | · 성명·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든 정보를 표시하여 발급 |
| |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| | · 성명·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를 표기하여 "상세"로 발급 |
| |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| | ·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2.11.)로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"Y"로 설정하여 발급 |
| | 인감도장 | | ·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시 생략 |
| | 인감증명서 | | ·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대리인 불가) ※ 본인 발급용 |
| 해당자 추가 서류 | 주민등록표등본(전체) | 배우자 | ·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 |
| | 주민등록표초본(전체) | 피부양 직계 존·비속 | ·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등본상에 등재된 사실 확인 ※ 주민등록번호, 과거 주소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든 정보를 표시하여 발급 ·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등본상에 등재된 사실 확인 ※ 주민등록번호, 과거 주소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든 정보를 표시하여 발급 |
| |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| 피부양 직계존속 배우자 | ·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·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(주택공급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) ※ "상세증명서" 및 주민등록번호 "전부공개"로 발급 |
| |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| 본인 피부양 직계비속 | ·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·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'상세'로 발급 |
| |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| 피부양 직계 존·비속 | · 피부양 직계 존·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및 청약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※ 직계존속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됨 ※ 30세 미만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됨 ※ 30세 이상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됨 |
| | 복무확인서 | 본인 | ·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군 복무기간(10년 이상) 명시 |
| 대리인 신청시 |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| 당첨자 본인 | ·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신청 불가, 용도란 아파트 계약 위임용 기재 ※ 본인 발급용 |
| | 신분증 | 대리인 | 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※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(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),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(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) |
| 부적격 소명 자료 | 무주택 소명서류 | 해당 주택 | ·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,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|
| | 당첨사실 소명서류 | 본인 | ·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(당첨사실 무효확인서,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) |

- ※ 상기 제증명 서류는 **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2.11.)이후 발행분만** 유효합니다.
- ※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시 "주민등록번호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 및 "주소변동이력"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,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- ※ 정당한 당첨자(적격여부)를 판명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※ 상기 내용은 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' 등 관련 법규 및 '국토교통부 지침' 등에 근거하여 작성한 내용으로 '관련 법규' 및 '국토교통부 지침' 등과 상기 내용이 상이한 경우 '관련 법규' 및 '국토교통부 지침'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
본 안내문은 입주자모집공고를 요약한 내용으로 반드시 당첨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